

아리야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27호 2014. 7. 4. (금)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정선군 규칙 제12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79
- 정선군 규칙 제1232호 정선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90
- 정선군 규칙 제1233호 정선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 95
- 정선군 규칙 제1234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규칙 97
- 정선군 규칙 제1235호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99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규 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선군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시험등에 관하여”를 “시험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을 “정선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으로,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인이상”을 “1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견습 직원의 견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 기간의 연장

제3조의2 중 “아닌자”를 “아닌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64조에 따라”로, “응시하는자는 응시수수료 로”를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로, “시험요구서류”를 “시험요구 서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험실시기관”을 “시험실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을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법령에 의하여”를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0조제1항 중 “제9조 및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로, “실시하거나,”를 “실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따 로”를 “따로”로, “실시하거나,”를 “실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 타”를 “그 밖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장이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로, “거주요건등”을 “거주요건 등”으로, “실시하거나,”를 “실시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로, “시험실시기관 의”를 “시험실시기관의”로 한다.

제11조 중 “의 한 전역예정일전 6월”을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로,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가산한 다”를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인이상으로”를 “2명 이상으로”로, “인이상”을 각각 “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민간전문가”를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험 의”를 “시험의”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종사하는 자”를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있 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도 또한 같다”를 “사람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서류전형의 기준)”을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3조의3제1항 전단 중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다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신규임용시험 을”을 “신규임용시험을”로, “최고점으로 별표7의2의 비율에 의한”을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7의4”를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로,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으로, “별표4”를 “별표 4”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시험의 만 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을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 경우에는 본인에게”를 “경우 본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을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임용예정직급 별 자격증을 가진자로”를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 중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 는”을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으로, “[별표 8]”를 “별표 8”로, “근 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로, “정한 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제6조에 따라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2및별표 9”를 “별표 2 및 별표 9”로, “교육감 또 는 학교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이어야”를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별표 2및별표 9에 규정된 당해”를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대 학 졸 업 자	6급 · 7급 · 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 · 8급 · 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제14조제6항 전단 중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사람은[별표 10] 및 [별표 10의2]”를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별표 2] 및 [별표 3]”를 “별표 2 및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다.
-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표”를 “같은 표”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 기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지도직 공무원”을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2] 또는 [별표 6]”를 “별표 2 또는 별표 6”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3] 또는 [별표 6]”를 “별표 3 또는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로, “당해직급에 상응 하는”을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

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 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 제목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을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로,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 는 구비서류중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 조사회보서를 제외한 서류”를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를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를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로,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 별·근무 희망지역별”을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 별·근무희망 지역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있을때”를 “있을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 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 전단 중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로, “7일내”를 “7일 이내”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경 우”를 “경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을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 임용순 위명부”를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로, “인사 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의”로, “고득점 자순으로 작성한 다”를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로 하

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순위에 의하여”를 “순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를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을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를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5””를 “별표 15”로 한다.

제26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을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전보하여야”를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근무성적”을 “근무성적,”로,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를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임용권자는 수당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제2항 중 “우선적으 로”를 “우선적으로”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 이상, 읍·면은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제27조제2항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3조에 따른”으로, “제34조의”를 “제34조에 따른”으로, “자는 우선하여 승 진임용”을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으로 한다.

제27조의2의 제목 “(공무원교육원 교관임용)”을 “(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능력등을”을 “능력 등을”로, “1인 이상”을 “1명 이상”으로, “강의등”을 “강의 등”으로, “6급이상”을 “6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관으로 임용될 자는”을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으로, “자이 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제2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의2제4항제3호 중 “교관”을 “교수요원”으로, “손상시킨 자”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앞의 “제4장 정년연장”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및 별표 5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부터 별표 7까지,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8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0의2, 별표 13 및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 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 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 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 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 통관계사, 항공정비사, 항공 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 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의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 리	조 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비고: 위 “체격” 항목 중 “팔·다리의 완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 회 입상자 (2년)

2. 삭제

비 고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3급 : 8년이상, 4급 : 4년이상,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전산	전산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농업기계	기능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시계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중
	전 자	기 술 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전자기기 기 사: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 능 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농 화 학	기 술 사: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종자, 식품 기능사: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산림 기 능 장: 산림 기 사: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산림, 임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수산제조, 식품 기 사: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생물공학
	수산물검사	산업기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수산양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조선 기 사: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일반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사: 의공, 산업기사: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 술 사: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정 비	기 사: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 축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 창호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기 술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시설	기 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방송통신		기 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통신사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2.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법무행정	변리사(4)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감 정 평 가 사(3)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관리 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관리 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관리 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 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 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약 무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간 호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환 경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환경측정분석사(3)	환경측정분석사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시 설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속 기	속기		한글속기 12급(5)	한글속기 123급(2)	한글속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오물처리사 1급(3)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조리	조리			조리사 1급(4)	조리사 1급(2)	조리사 1급
간호 조무	간호 조무					간호조무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택 제 임 기 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제6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화 학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약사, 위생사(5)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 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 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 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 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 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 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 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 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 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 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 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 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 (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제6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행정	행정			산업기사(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기계분야)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능사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생산기계,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분야)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설바전기분야)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기분야)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야 금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농 업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잠 업		기사(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술사(농화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임산가공)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산물검사			
	해양교통 시설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항 공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시 설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시 설	수도토목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도시교통 설계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신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술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리	조리		조리사 1급	조리사 1급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2]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13조의3 관련)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6·7급,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 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 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다군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신설 2006. 2.15>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임상심리사2 급	물류관리사, 철도교 통안전관리자직업상 담사2급, 사회조사분 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 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제2호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농업기계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사

공 업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열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잡 업	기 사 : 기 사: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 평가관 리, 산림, 생물공학,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축산, 산림, 농화학, 수산제조, 산업위생관 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수산제조, 산업위 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 원예, 버섯종균, 축산,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 성 동 위 원 소 취 급자(일반), 방 사 선 취 급 감 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 업,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 용: 방사성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일반), 방사선 취 급 감 독 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식품, 생물공학, 수산양식	
	수 산 물 검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수산증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질환 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 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의 사, 한의사, 치 과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 위 원소취급자 (특수, 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자격증가 산비율 적용:임상 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 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사, 간호 사, 조산사, 응급 구조사2급, 의지 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환경, 산업위생 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 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 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열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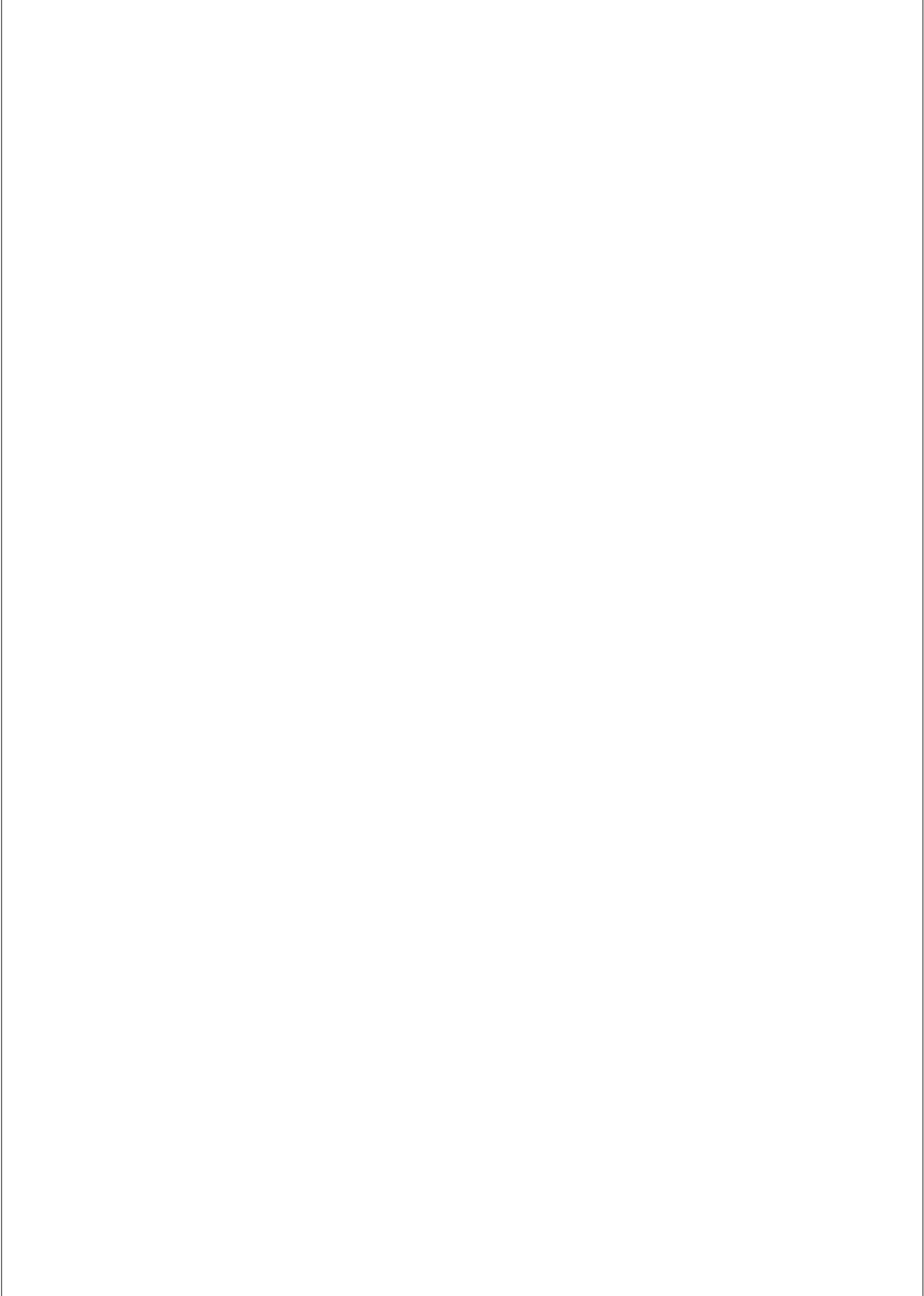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농촌지도	기 계 농업기계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유회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연삭, 밀링, 수치제어선반, 수치제어밀링,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검사,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공업연구	금 속	기술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전기도금, 특수도금, 주조, 원형, 냉간압연, 열간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방사, 섬유공정,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능장: 염색 기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방사, 방직, 섬유물리, 섬유화학,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직기조정, 직물가공, 염색, 섬유제도디자인, 편물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화 공	기술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화 학	기능장: 위험물관리, 가스 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경영	기술사: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제품디자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물 리	기술사: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 전자, 원자력, 열관리, 광학 산업기사: 계량물리, 전자, 열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촌지도	농 업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벼짓중근,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농화학, 농림토양평가 관리, 조정,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화훼장식,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 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 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 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잠 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버섯종균, 채소재배, 과수재배, 원예, 식물보호, 농산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 사 : 섬유물리, 섬유화학,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생물공학 산업기사 : 섬유가공,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 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 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농촌지도	농업경영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청 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열관리, 자동화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열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독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기 을 장 : 산림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기 능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제지, 목질재료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기 능 사 : 축산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수산자원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어로, 수산식품가공	
어촌지도	어 촌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어로, 어병,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어병,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기 능 사 :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공업화학,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산업기사 : 기상, 광해방지 공업화학,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식물보호,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기 능 사 :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보선,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석공, 토목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목재창호,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건축사

비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강			
	초·중·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윗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윗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농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수산제조	냉동학, 수산가공, 식품가공(학), 식품제조
	수산증식	증식학, 수산증식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수 산 물 검 사	식품가공(학), 냉동학, 수산가공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 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측 지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약 제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약제·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0의2]

연구관 및 지도관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계급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가목·나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및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도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 제1호 라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지방연구직·지도직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다목·제2호 다목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관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 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 : 연구경력은 해당 학위를 취득한 후의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4조제2항 관련)

상당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일 반 직 공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경 찰 공 무 원		경 정	경감·경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령 지방소방령		소 방 경 소 방 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 방 장 지방소방장	소 방 교 지방소방교	소 방 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군 무 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국 가 정 보 원 직 원		5급	6급 기능 6급이상	7급 기능 7급	8급 기능 8급	9급 기능 9급이하
별 정 직 공 무 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 이하	“나”군 24호봉 이상	“나”군 23호봉 이하	“다”군 25호봉 이상	“다”군 24호봉 이하

[별표 15]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 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 기계,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 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항 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 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선박설 계, 소음진동, 선박건축, 선박기계),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 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 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 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 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 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 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 파전자, 무선통신, 항공,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소 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리, 조 선, 선박기계, 반도체설계, 무선설 비, 방송통신,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 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공사, 전기 기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 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 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 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산업기사(운할관리, 생산기계, 전 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 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 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 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 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 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 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정보 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 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항공, 열 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 비<소음진동, 기계분야>, 품질관 리, 영사, 교통, 조선, 생산기계)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공 (전 업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열관리)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열관리)
공 (금 업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면,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공 (섬 업 유)	기술사(방사, 제포, 방직, 생사, 염색가공, 의류, 품질관리)	기사(방사, 방직, 염색, 가공, 의류, 품질관리,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방사, 섬유기계, 방직,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즈, 편물, 품질관리, 산업안전)
공 (화 가 업 공 스)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공 (자 업 원)	기술사(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해양, 응용지질, 지질 및 지반)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농 업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 (축 업 산)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지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정)
수 의	수의사		
해양 (수 산 수 산)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항로 표지,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항로표지, 수질환경, 식품)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 박)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의무기록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영양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식 품 위 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의 료 기 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사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 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고분자제품,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환경, 농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항 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정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자가용조종사
시 설 (도시 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조경, 지적, 도시계획, 교통)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경, 지적, 지적기능, 교통)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시 설 (토목, 수도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 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지적기능,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시 설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시 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조경,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건설안전)	산업기사(교통, 조경,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지적기능, 철도보선,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 송 통 신 (통 신 사)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방 송 통 신 (통신기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무선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전자, 전자계산기, 전파통신)
방 송 통 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정보통신,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파통신, 통신선로)
위 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위생사, 영양사, 오물처리사 1급	산업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오물처리사 2급

토목운영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관리,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설비,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관리) 기능장(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생산기계,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농업기계, 배관설비, 정보통신, 열관리, 산업안전, 공정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품질관리,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공업화학, 화약류 제조, 세라믹, 고분자제품 제조,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학장치설비,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고분자제품제조)
선박기계 운영 선박기관 운영		기술사(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기계제작, 산업기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생산기계, 항로 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직렬	연 구 사
공 업 연 구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철야금, 비철야금, 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 항공기관, 항공기체, 방사, 제포, 방적, 생사, 염색가공, 의류, 지하자원개발, 탐사, 지하자원처리, 화약류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조선, 항공, 방사, 방직, 염색가공, 의류,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응용지질,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원자력, 열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공정관리, 품질관리, 포장, 광학, 승강기, 식품)
농 업 연 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 업 연 구 (잡업곤충)	기술사(생사)
농 업 연 구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농 업 연 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유체기계,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생물공학, 축산) 영양사, 위생사
녹 지 연 구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기사(종자,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정)
해 양 수 산 연 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계급 직렬	연 구 사
보 건 연 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환 경 연 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경영, 산림공학,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 설 연 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지반, 교통신)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 설 연 구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직렬	지 도 사
농 촌 지 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 유체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어 촌 지 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물관리,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비고 :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인사규칙의 관계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응 시 원 서(원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나는 ①제 회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입증지 첨부란	②주 소		③전 화: 핸드폰:						
	④경 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종사) 일까지						
	⑤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⑥가 산 기표란	자격1	자격2	자격3	⑦취업보호 취업지원
	⑧응 시 계 급	급		⑩성명	(한 글)			⑫응시자 우무인	
	⑨응 시 직 렌	(직)			(한 자)				
※응시 번호			⑪ 주민등록 번호						

간
인

⑬응 시 계 급	급	응시원서(부분)		⑮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⑭응 시 직 렌	(직)	⑮제 회 시험	(한글)	
		⑯성명	(한자)	
※응시 번호		⑰ 주민등록 번호		

간
인

※	⑱응 시 계 급	급	응 시 표		⑲ 사 진 반명함판 (3.5cm×4.5cm)	
	⑳응 시 직 렌	(직)	㉑제 회 시험			
	㉒선 택 과 목	선택1	선택2	선택3		㉓성 명
						㉔주민등록 번호
※응시 번호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120g/m²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시험회수 및 시험명 ①, ⑮, ㉔...당해 시험시행공고에 따라 그 시험회수 및 시험명칭을 기재할 것.
2. 출원자성명 ⑩, ⑯, ㉓... 정자로 기재하되, ⑩, ⑯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3. 주소 ②... 현재 거주하는 곳(번지, 통, 반 명기)을 기재할 것.
4. 경력 ④... 공무에 종사한 최종경력(군 경력도 포함)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관서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5. 선택과목 ⑤... 선택과목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개과목 이상인 경우 1, 2, 3으로 표시된 선택순서 표기에 따를 것.
6. 가산기표란 ⑥⑦... 6급이하의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시행 공고문을 참조하여 해당란에 그 자격 및 시행기관을 기재하거나 취업보호대상자의 해당표시(√표)를 할 것.
※ √표 대상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7. 응시계급 ⑧, ⑬, ⑰... 응시하는 계급을 기재할 것.
9. 응시직렬 ⑨, ⑭, ㉒... 응시하고자 하는 직렬을 기재하고 ()안에는 당해 직렬중 직류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응시직류까지 명기할 것.
10. 응시번호란...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에 기재하지 말 것.
11. 사진란 ⑱, ㉕...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폴로 첨부할 것.
12. 우무인 ⑫... 시험시행일에 응시자로부터 우무인을 받으므로 출원시에는 찍지 말 것.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부호 및 번호) 및 사진 위의 철압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기재된 작성요령, 주의사항 및 감시관의 지시에 따르되, 동일한 색의 필기도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진(원서첨부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 지참 재교부 받아야 한다.	6. 시험실내에서의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 등은 일체 금하며, 일단 입실한 자는 당해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다.
3.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흑색 또는 청남색 필기구만을 지참(휴대폰 등 지참불가)하여야 한다.	7. 부정행위자, 규칙위반자 또는 주의사항이나 감시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당해인의 시험을 무효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처분한다.
4. 시험당일은 매시험 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위 바른편에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기타 자세한 것은 감시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 번호		제 회 번		⑥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세)		④ 성 별 남 ☐ 여 ☐	⑤ 희망지역 제1지역 시 군		※ 등록심사		
	③ 주민등록번호			제1지역 시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	㉡	
⑦ 현 주 소						(사진부착)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⑩ 자 격 면 허				⑪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⑯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⑰ 재산상황 가. 부동산(평) 나. 동 산(원)

⑮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명	직업	현주소

①⑨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비고
첨부서류	호적초본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수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정선군수 귀하

②0
우
무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 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 4매를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호적과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 미흡: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보통: “우수”와 “보통” 외의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12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 민 등 록 번 호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시행)에 따라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전문경력관 제도 신설 등 현행 법령과 안전행정부 표준안에 맞춰 관련조문 개정 등을 통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의결 조항 수정(안 제3조제2항)
- 지방기능직공무원 관련조항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제8조, 제13조, 제13조의3제2항, 제14조제1항·제4항·제5항, 제15조의2제1항, 제24조제1항·제2항)
-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관련조항 신설(안 제13조의3제1항, 제2항, 제14조제9항, 제24조제2항, 제28조)
-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항 신설(안 제17조제2항·제5항·제6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1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로, “자는 수당지급”을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를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를“ 경우”로, “신청기간내”를 “신청기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으로, “익일을 종료일로 본다”를 “익일로 종료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을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청기간중”을 “신청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결정전”을 “결정 전”으로 하고, 같은 항후단 중 “정년잔여기간”을 “정년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각호”를 “각 호”로,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연금법」 상”으로, “예산 의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상”을 “「공무원연금법」 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제7조제2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를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로, “해당계급”을 “해당 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안에서 심사기 준”을 “범위에서 심사기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명예퇴직 수당”을 “명예퇴직수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소속기관”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를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퇴 직수당지급신청자”를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자”로, “명예퇴직수 당수령권”을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으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를 “「공무원 연금법」 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를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을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제9조의 규정”을 “제9조”

로 한다.

제11조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에 따른”으로, “정직·휴직·직위해 제기간”을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을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을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으로, “퇴직예정일”을 “퇴직예정일”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신청기간내”를 “신청기간 내”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을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를 “선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제9조의 규정을”을 “제9조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앞쪽)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정선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기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정선군	→	신청인 통지 소속기관	→	지급 정선군
---------------	---	------------	---	------------------	---	----------------	---	-----------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용됩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일반직(암7제 제외) []특정직() []별정직	직급·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확인	인사담당	(인)
----	------	-----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정선군수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소 속 기 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정 선 군	→	신청인 통지 소 속 기 관	→	지 급 정 선 군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시행)에 따라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관련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지방기능직공무원 관련조항 수정(안 제6조제2항)
-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안 별표 1)

정선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2호

정선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을 “정선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으로, “군수”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을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로, “방송등 기타”를 “방송 등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졸업후”를 “졸업 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해당하는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제2호 중 “대학2년이상 재학생”을 “대학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하고, “계열별 로”를 “계열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입학성적이”를 “입학성적이,”로, “[별표]”를 “별표”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군 수”를 “군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당학교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조 중 “(별지 제3호서식)1통”을 “(별지 제3호서식) 1통”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을 “(1명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으로 한다.

제7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 적”을 “제4조에 따라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으로, “품행등을”을 “품행 등을”로,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국 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를 “선발한다.”로 한다.

제8조 중 “해당학교장”을 “해당 학교장”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로 한다.

제9조 중 “입학 금”을 “입학금”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 다) 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학교장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를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있는자”를 “있는 사람”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반납 금의 전액면제”를 “반납금액의 전액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위외의 질병 기타”를 “공무 외 질병 그 밖의”로, “없을때에 는”을 “없을때에는”으로 “반액면제”를 “반액 면제”로 한다.

제12조 중 “선발된 자”를 “선발된 사람”으로, “장 학생”을 “장학생”으로, “완료할때”를 “완료할 때”로, “관계서류일체”를 “관계서류 일체”로, “학사관리서류등”을 “학사관리 서류 등”으로, “보관 관리하되”를 “보관·관리하되”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 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및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을 “(기타 각종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학상 태”를 “수학상태”로,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등의”을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 등의”으로, “각호에 의한다.”를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 10호서식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 기준(제4조제3호 관련)

구분 학교별	재학생	신입생
대학 및 전문대학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같은 학과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고등학교	같은 학년 재학생의 3할 이내인 사람	같은 학년 재학생의 3할 이내인 사람

개 정 이 유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고등학교, 전문대, 기능학과 설치대학) 재학생 중 지방공무원에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상자가 임용된 후 일정기간 의무복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학생 선발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등 과도한 특혜 등이 문제시 되어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계획>에 따라 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자치단체별 장학생 의무선발 조항 삭제(안 제3조)
- 국·공립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 조항과 경합자가 생길 경우
공무원·새마을지도자 가족의 자녀 등 우선선발 조항 삭제(안 제7조)
- 장학생 선발 성적요건 강화(안 별표)

정선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3호

정선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규칙의 근거 법률인 대통령령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어 본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정선군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 폐지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4호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규칙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 지 이 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13. 12. 12. 시행)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등에관한규칙 폐지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4년 7월 4일

정선군 규칙 제1235호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6월이상 5년미만”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배정 할 수”를 “배정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 호의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운행기간이”를 “운행기간이 별표 1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최초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및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교체기준(제13조 관련)

차 종	차 형 (자동차관리법 적용)	배정대상	차량교체 가능조건
승 용 (전 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수 · 부군수 · 군 의회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 한 경우
	짙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군수	
승 용 (의전용)	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군 의회	
승 용 (업무용)	중형승용차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 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 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용차	· 단위부서	
	경형승용차	· 단위부서	
	짙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단위부서	
승합용	대형승합차(승차정원36인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중형승합차(승차정원이16인 이상 3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 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 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소형(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화물용	대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을 경과 또 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 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 연한이 7년 이상)
	중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소형화물차(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특수용	특수용도 제작차량 또는 특수목적 사업을 위해 구조변경을 거친 차량	· 군의 본청 · 단위부서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요청

1.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요청하오니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 요청 내역

①차량 소속 기관	②차 종	③차 형	④차 명	⑤연 식	⑥사용 부서	⑦요청 정수	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이 체)	⑨차량구입 비및운영비 책정예산액	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	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①인

제 목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1조(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종(차형)변경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차종(현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정수번호
			()						

2. 변경할 차종(차형)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⑨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⑩ 비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①인

제 목 차량교체 승인요청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체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⑤ 연식	⑥ 차대 번호	⑦ 사용 부서	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	⑨ 등록번호	⑩ 정수번호
		()							

2.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	② 차종	③ 차형	④ 차명 (규격)	⑤ 연식	⑥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	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	⑧ 차량등록 예정 관서명	⑨ 비 고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및 관계증명서류. 끝.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수 신

발 신

인

제 목 차량교환 승인요청

1.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교환 승인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차량교환 승인요청 내역

① 차 종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차 대 번 호	⑤ 등 록 번 호	현 재		변 경		⑩ 비 고
					⑥ 차 량 소속기관	⑦ 사 용 부 서	⑧ 차 량 소속기관	⑨ 사 용 부 서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별지 제7호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문서번호

20 . . .

수 신

발 신

①

제 목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
(등록말소) 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 차량 내역

①승인번호 및 일자	②차종 (차형)	③차 명(규격)	④ 연 식	⑤구입가격 (처분가격)	⑥차 대 번 호	⑦등 록 번 호	⑧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	⑨정수번 호

○ 비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 말소 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개 정 이 유

-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규칙」 “차량 교체기준” 개정 표준권고안 등에 따라
우리군 공용차량 교체기준 완화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으로 자치단체 소유차량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명을 「정선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부 표준 권고안 기준인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으로 명칭 변경
- 공용차량 교체기준 일부 완화(안 별표 1)
- 공용차량의 사적용도 사용을 금지하는 법적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